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21.>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
3.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 방안 수립 및 심의
4.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 및 심의

제3조(구성) ①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03.21>

②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3.21., 2024.04.22., 2025.02.26.>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에 의한 위촉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11., 2018.08.28., 2024.04.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전공교육과정위원회) ① 전공교육과정위원회는 전공별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전공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편성에 관한 사항
2. 전공교과목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전공교육과정의 수요조사
4. 전공특강의 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공교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겸임하고 소속 교원 모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 총원이

외부위원(교내 혹은 교외)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전공주임교수 재임기간으로 하고 해당학과 소속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21.11.24.]

제9조(교육과정조정위원회) ① 융합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12조 융합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4.04.22.>

1.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
2. 교육편제조정위원회에서 학과 신설,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

② 위원회 구성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12조 제2항 1,2호를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1.11.24.]

부 칙(승인일자: 2010.6.16)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8.28)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